

2023년도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현대자동차그룹 주관기관 도입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제조혁신추진단, 현대자동차그룹(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자동차 부품산업진흥재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도 대중소상생형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일

현대자동차그룹 중소협력사상생지원팀

◆ 본 공고는 대중소상생협력을 위하여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할 주관기관/협업기관이 중소기업(협력사)을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I. 사업목적

- 자동차업종 중소기업 현장에 적합한 스마트팩토리 구축지원을 통해 국내 제조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우수품질의 자동차부품 협력사를 육성함으로써 미래형 자동차를 대비하는 등 자동차산업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 정부 지원사업의 고도화를 통한 자동차산업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제고
 - 정부 지원금 매칭을 통한 지원범위 및 수혜기업 확대
 -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 및 보급 수준 향상을 위한 고도화 지원

II. 사업 지원계획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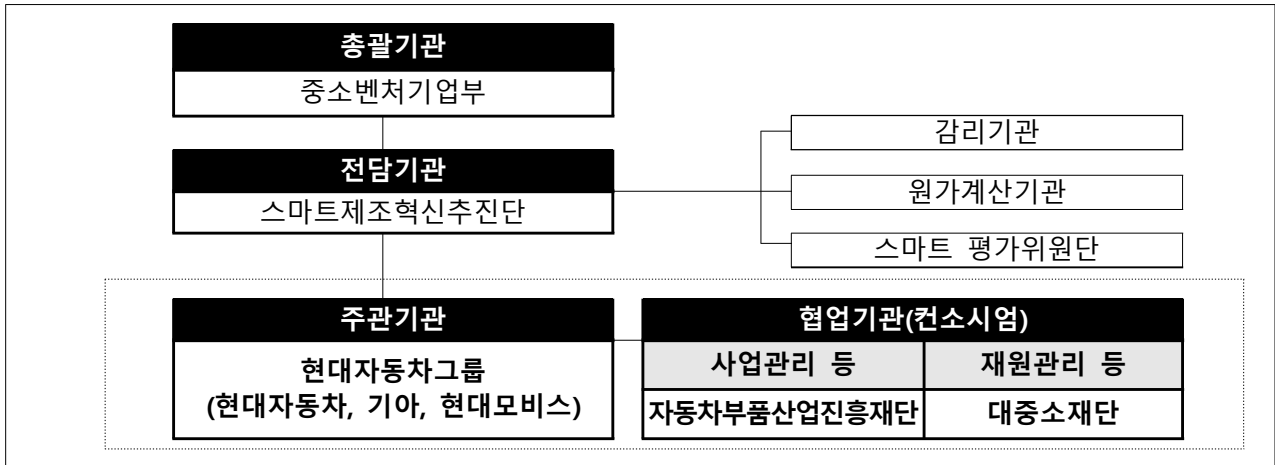
- 정부 지원사업의 고도화를 통한 자동차산업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제고
- 정부 지원금 매칭을 통한 지원범위 및 수혜기업 확대
-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 및 보급 수준 향상을 위한 고도화 지원

□ 지원규모 : 총 106개사 지원

◦ 기초 46개사, 고도화 60개사

* 단, 도입기업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추진체계



□ 지원내용

◦ (구축비용 지원) 주관기관(대기업 등)이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구분	지원조건	정부	주관기관	중소기업
총 구축비용	유형 1	30%	60%	10%

◦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지원

*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지원

- 생산공정 및 제조회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존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5G,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지원조건

구분	지원유형		정부지원금(최대)	주관기관지원금	도입기업	사업기간(최대)
유형1	1-A (중간1이상 수준)	고도화	0.3억원 (총사업비 30%)	0.6억원 (총사업비 60%)	0.1억원 (총사업비 10%)	9개월
	1-B (ICT미적용, 기초 이상)	동일수준	0.15억원 (총사업비 30%)	0.3억원 (총사업비 60%)	0.05억원 (총사업비 10%)	6개월
		기초	0.15억원 (총사업비 30%)	0.3억원 (총사업비 60%)	0.05억원 (총사업비 10%)	6개월

- * '동일수준'은 수준향상 없이(기초→기초,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재신청하는 경우. 단, 목표 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의 경우 1회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최대 1.2억원) 지원
- *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에 의한 수준 참고
- *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 스마트공장 수준이 중간1이상인 고도화 신청기업은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신청자격

구분	지원유형		신청자격		지원구분
			기업규모	목표수준	협력사
도입 기업	유형1	1-A	국내 중소 제조기업	-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예정기업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 기초(미적용포함)-> 중간1, 중간1->중간2	○
		1-B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 기초→기초,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
				기초	- 기초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 * 생산정보 디지털화
공급 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관련 증빙자료 제출)		

- * 현대자동차 그룹은 협력사만 지원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3년 8월 1일(00) ~ 2023년 9월 30일(목) 00시까지 신청·접수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공급기업 풀 공지 참조)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주관기관 별 상이)
1	사업계획서
2	견적서(선정 견적서, 1건 이상의 비교견적서)
3	도입/공급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4	도입/공급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도입기업의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6	FP(기능점수)산정자료_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 지원절차

※ 도입기업 지원 절차는 주관기관 별 상이 할 수 있음



- * 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최종점검에서 수준측정)
- * (필수) 공급기업은 구축완료일로부터 도입기업의 시스템 적응 및 활용지원을 위해 6개월간 A/S서비스 지원 (단, 유형2 과제는 의무사항 제외)

□ 지원제외대상

- 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 정부일반형, 대중소상생형 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협약서 상 구축완료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집중AS기간 수행중인 기업은 '23년 사업신청 가능)
 - ** 단, 최종감리 등에서 실패판정이 나오는 경우 고도화 과제 진행 중지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도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 기타사항

- 유형2 지원조건의 경우 기술임치 의무대상에서 제외 (선택사항)
- 스마트공장 활용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기업에 구축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3년간 제출 필수. 단,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연 2회(6월·12월) 수기 등록 가능
- 선정시 각 사업별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상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여 협약체결 및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단, 사업운영상 필요시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협의를 통해 별도 운영 가능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참여기업은 제조데이터를 수집·저장*하고 분석·활용을 위해 KAMP**와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권장)
 - * AAS(Asset Administration Shell) 기반의 데이터 수집·저장 표준 체계에 따라 제조 Raw Data를 실시간 수집·저장 가능(붙임1 참고)
 - ** KAMP(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 데이터 수집·분석부터 AI 솔루션 개발·확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 개별공장에 설치했던 기존 솔루션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 가능하며, 이 경우 KAMP 활용 우선 권장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활용 기업은 서비스 이용료(최대 3년, 소기업은 최대 5년)를 사업비(도입기업부담금)에 포함 가능(제조현장데이터 연동 필수)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기업은 최종완료시 도입/공급기업 양자계약서, 계약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 소기업 규모 기준은 붙임2 참고
- 도입기업 자체 전산실에 구축하던 전산자원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구축하는 것을 적극 권장
-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아래의 ①사업관리교육 및 ②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의무 수료

구분	세부내용
①사업관리교육 (온라인)	- 대상 : 도입기업, 공급기업(대표, 실무자) - 내용 : 사업지침, 부실·부정구축행위 제재 사례, RCMS 사용법 등 * 협약 후 30일 이내 수료 완료, 별도 이수증 제출없이 시스템에서 확인 - 교육기관 : 스마트제조혁신협회
②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 대상 : 도입기업 - 내용 : ①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②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이수증 첨부 - 교육기관 :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교육이수 필 * 관련 교육과정 참고사항 : [붙임2 확인]

-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한 도입기업의 구축* 및 사후관리(시스템 안정화, AS관리 등) 인력 인건비를 기업 부담금 20% 이내에서 사업비에 포함 가능
 - * 공정 프로세스 분석, 맞춤형 솔루션 설계 등
 -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확인 예정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관련 전문가, 공급기업, 감리기관 및 원가계산기관 모집은 전담기관(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에서 추후 별도 공고 예정
-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 현장확인(평가) 절차 시 대조·평가항목* 예외 인정
 - *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기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 등
 - 단, 공장설립(계획) 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사업기간 내 추진 가능성 등을 정밀 검토
- 공급기업은 사업참여를 위해 스마트공장1번가의 공급기업 풀(Pool)에 등록(필수사항)하여야 하며, 자동화·센서·로봇 등 비솔루션(S/W) 기업도 공급기업 참여 가능

IV. 문의 및 연락처

□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 연락처

구분	기관명	문의사항	연락처
주관기관	현대자동차그룹 중소협력사상생지원팀	도입기업 모집 관련 ~	02-3464-0414
협업기관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사업관리 관련 ~	02-3271-2988 02-3271-2957

붙임 1

소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5. 부동산업	L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교육기관)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 (교육장소) 집합교육(GPC 경주, 재단 용산, 영남대 경산)
- (교육기간) 연중 운영(1~12월)
- (교육방식) 온라인 또는 집합과정
- (교육비용) 무료
- (신청방법)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http://www.kapkorea.org>)
를 통해 신청

※ 세부 교육내용 및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